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양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0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대호, 권수정, 권영희,  
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  
김상진, 김수규, 김재형,  
김정태, 김정환, 김제리,  
김창원, 김태수, 김평남,  
김혜련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  
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  
송아량, 유 용, 유정희,  
이광호, 이상훈, 이성배,  
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 
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  
전석기, 정진철, 최 선,  
최웅식, 최정순, 한기영,  
홍성룡, 황규복, 황인구  
의원(45명)

## 1. 제안이유

-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
다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위원회 설치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
라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, 학교체육진흥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운동부”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.
3. “학생선수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.
4. “학교운동부지도자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·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정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4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을 위한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5.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학생선수,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 등)**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,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재정지원)**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
2.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
3.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·내외 체육 교류 지원
4.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
5.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9조(연수 지원)**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, 서울특별시, 타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72300000006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양민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예산분석팀장  
윤지민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7.23

회신일 : 2021.08.03

내용문의 : 02-2180-7946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(위원회의 설치), 제8조(재정지원)제4호에 따라 비용 발생
  - 안 제6조(실태조사 등)에 따른 학교운동부 실태조사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‘2021학년도 상반기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계획(안)’ (2021.7.)에 따라 연1회 현장방문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음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
  - 안 제8조(재정지원)제1호·2호·3호, 제9조(연수 지원)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(붙임 참고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≒ 149,695천원(연평균 29,939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149,695천원으로 연평균 29,939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, 비용추계기간(2022~2026년) 이후에도 비용발생
- 물가상승률 미만영
- 안 제7조(위원회의 설치)의 위원회 위원은 총 15명(시의원 2명, 담당공무원 2명, 민간위원 11명)으로 구성하고, 회의는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안 제8조(재정지원)제4호에 따른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비용은 유사사업인 2021년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‘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’ 사업의 홍보 및 리플렛 제작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

※ 2021년 예산서 기준 관광체육국에서 추진 중인 ‘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’ 사업 중 홍보 및 리플렛 제작 비용은 25,739천원임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 ≙ 149,695천원(연평균 29,939천원)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총비용} &= \text{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 운영 비용} + \text{학교운동부 후원} \\
 &\quad \text{및 경기 홍보 지원비} \\
 &= 149,695\text{천원}
 \end{aligned}$$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 운영 비용 (안 제7조)	4,200	4,200	4,200	4,200	4,200	21,000
	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홍보 지원비 (안 제8조제4호)	25,739	25,739	25,739	25,739	25,739	128,695
	소계(b)	29,939	29,939	29,939	29,939	29,939	149,695
□ 총 비용(b-a)		29,939	29,939	29,939	29,939	29,939	149,695

○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 운영 비용 ≙ 21,000천원

$$- \text{산출방식} \sum_{i=1}^5 (\text{연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비용})_i$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2~2026년)

- 연간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위원회 운영 비용

$$\equiv \text{연간 위원회 참석수당} + \text{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}$$

$$\equiv 3,300\text{천원} + 900\text{천원}$$

$$\equiv 4,200\text{천원}$$

· 위원 참석수당

$$= (150\text{천원} \times 11\text{명} \times 2\text{회})$$

$$= 3,300\text{천원}$$

· 업무추진경비

$$= (30\text{천원} \times 15\text{명} \times 2\text{회})$$

$$= 900\text{천원}$$

※ 수당 지급인원은 위원 15명 중 시의원 2명,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, 업무추진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

※ 회의참석 수당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,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



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  
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○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홍보 지원비 ≙ 128,695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홍보 지원비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2~2026년)

- 연간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홍보 지원비  
≙ 25,739천원

※ 2021년 예산서 기준 관광체육국에서 추진 중인 ‘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’ 사업  
중 홍보 및 리플렛 제작 비용은 25,739천원임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예산분석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윤지민

☎ 02-2180-7946

e-mail : yjm1030@seoul.go.kr

[붙임]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21년 예산	사업 내용	관련 조항
전국소년체육대회 (학교운동부동계강 화 훈련비 지원-공립·사립)	500,000	-학교운동부동계강화훈련비지원 ·기간 : 2021.11.~12. ·대상 :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운동부(공립) ·내용 :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·소요예산 : 350,000천원(1,000천원×350팀) -학교운동부동계강화훈련비지원 ·기간 : 2021.11.~12. ·대상 :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운동부(사립) ·내용 :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·소요예산 : 150,000천원(1,000천원×150팀)	
선진운동부육성	1,720,600	-e-school운영 ·기간 : 2021.3.~2022.2. ·대상 : 중·고등학교 학생선수 8,000명 ·내용 :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위탁 운영 ·소요예산 : 40,000천원 -취약종목지원 ·기간 : 2021.3.~2022.2. ·대상 :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운영교 및 학생 선수 ·내용 : 학교운동부 안전교구설비 및 동·하계 훈련비 지원 ·소요예산 : 1,563,000천원 ※ 교구시설비지원 공립 30교, 사립 20교 ※ 훈련비지원 공립 368팀, 사립 195팀 -학생선수인권교육강화 ·기간 : 2021.3.~2022.2. ·대상 :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운영교 ·내용 :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공부하는 학생 선수 운영비 지원 ·소요예산 : 117,600천원	제8조(재정지원) 제1호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 부지도자 지원, 제2호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 원
선진운동부육성(서 울시전입금)	500,000	-학생선수인권교육강화 ·기간 : 2021.2.~12. ·대상 :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5,000명 ·내용 :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 인, 진로 강연,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육, 학 교운동부 스포츠 라이브러리 구축 ·소요예산 : 117,600천원	
학교스포츠클럽대회	2,042,420	-서울·북경체육교류 ·기간 : 2021.10.~11. ·대상 :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·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학생 ·내용 : 학교운동부 학생 간 체육교류 ·소요예산 : 36,000천원 -본선대회운영지원	제8조(재정지원) 제3호 국·내외 체육 교류 지 원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기간 : 2021.4.~11.</li> <li>·대상 : 초·중·고 2,750개팀</li> <li>·내용 : 참가학교 운영비 지원(유니폼, 교통비, 물품구입비 등), 종목별 운영비(심판비, 물품구입, 장소 대관료 등)</li> <li>·소요예산 : 764,670천원</li> <li>-스포츠클럽운영지원</li> <li>·기간 : 2021.4.~12.</li> <li>·대상 :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 학교스�포츠클럽 운영 및 참가팀</li> <li>·내용 : 단위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, 훈련, 참가 지원</li> <li>·소요예산 : 1,190,000천원</li> <li>-지역청대회운영지원</li> <li>·기간 : 2021.4.~11.</li> <li>·대상 : 초·중·고 2,750개팀</li> <li>·내용 : 교육지원청 종목별 운영비(심판비, 물품구입, 장소 대관료 등)</li> <li>·소요예산 : 23,700천원</li> <li>-학교스포츠클럽대회(교육지원청)</li> <li>·기간 : 2021.4.~8.</li> <li>·대상 : 초·중·고 2,150개팀</li> <li>·내용 : 교육지원청 종목별 운영비(심판비, 물품구입, 장소 대관료 등)</li> <li>·소요예산 : 28,050천원</li> </ul>	
전국체육대회 (전국체육대회운영비)	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강화훈련전임코치연수경비</li> <li>·소요예산 : 75,000원 × 400명 = 30,000천원</li> </ul>	제9조(연수 지원)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연수 지원

자료 :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